

[별표 2] <신설 2010.10.21>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

구 분	지 정 요 건
법인형태 및 사무소	○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말한다. 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하나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넷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15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설비기준	가. 전류계 5대 이상 나. 멀티미터 5대 이상 다. RPM미터 5대 이상 라. 접지저항계 5대 이상 마. 절연저항계 5대 이상 바. 초시계 5대 이상 사. 버니어캘리퍼스(200mm) 5대 이상 아. 버니어캘리퍼스(300mm) 5대 이상 자. 경도측정기 5대 이상 차. 내외경퍼스 1대 이상 카. 줄자 5대 이상